

제325회 정례회

2013. 12. 10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 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3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중 일부내용이 2003년 개정당시 여건에 맞게 규정되어 있어 최근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 이전,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,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개최 등의 주변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으로 주변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경(안 제1조)

나.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'사업'을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·진흥 등 현재 여건에 맞게 변경(안 제5조)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의 목적은 최근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재단의 사업 또한 보건·의료·바이오 분야의 육성과 진흥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바이오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해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됨.

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가. 「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